

# 2025년 제1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2697호
- 다. 제출일자 : 2025. 5. 26.
- 라. 회부일자 : 2025. 5. 29.

## 2. 제안이유

-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한 일상 등을 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가. 세입예산안

- 2025년 제1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9억 18백 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3백만 원 대비 52.1% 증액(3억 14백만 원) 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5년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감률	
총 계	603	918	314	52.1%	
일반 회계	일반회계 소계	603	913	310	51.4%
	세 외 수 입	-	250	250	순증
	국고보조금 등	-	250	25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60	60	순증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60	60	순증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5년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감률
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회계 소계	-	4	4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4	4	순증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4	4	순증

## 나. 세출예산안

- 2025년 제1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1,055억 65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1,052억 21백만 원 대비 0.3% 증액(3억 44백만 원)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5년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감률
<b>총 계</b>		<b>105,221</b>	<b>105,565</b>	<b>344</b>	<b>0.3%</b>
일반회계	소 계	105,221	155,565	344	0.3%
	행정운영경비	166	166	-	-
	재 무 활 동	-	-	-	-
	사 업 비	105,055	105,399	344	0.3%

## 4. 검토의견

### 가. 세입예산안

- 2025년 제1회 미래청년기획관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1%인 3억 14백만 원(일반회계 3억 10백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 2025년 제1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5년도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증감률
총 계		603	918	314	52.1%
일반회계	일반회계 소계	603	913	310	51.4%
	세 외 수 입	-	250	250	순증
	국고보조금 등	-	250	25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60	60	순증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60	60	순증
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회계 소계	-	4	4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4	4	순증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4	4	순증

#### ① 국고보조금 2억 50백만 원 - 청년 친화도시 조성 (예산서 P.32)

- ‘청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 50백만 원이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음. ‘청년 친화도시 조성’은 지역의 특성·여건에 맞는 청년정책 추진으로 지역청년의 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모델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에 근거<sup>1)</sup>하여 국

1)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무총리가 기초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sup>2)</sup>,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상남도 거창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되었음

- 청년 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지자체는 지정일로부터 5년간 중앙정부로부터 행정·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지정 후 1~2년간 재정지원으로 연 2억 50백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므로 국비-지방비간 5:5 매칭비율로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②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백만 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서 P.38)**

- ‘2024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60백만 원을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편성되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제1항<sup>3)</sup>에 따라 국가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는 회계연도 결산 이후 국고에 반환해야 하므로 보조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함

**< 2024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결산 결과 >**

구 분	예산현액	보조금반납금	보조금정산잔액
청년 전세보증료 지원	2,400,000 천원 (국비·시비 5:5)	59,981 천원	64,891 천원

2) 청년친화도시 지정결과 안내(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72 (2025. 2. 11.)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청년친화도시 3곳 최초 지정’,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5. 2. 11.)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③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백만 원 -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 (예산서 P.70)

-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한 집행잔액(8,640 천원, 국비시비 5:5매칭) 중 국비 4백만 원이 균형발전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 예산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편성되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는 회계연도 결산 이후 국고에 반환해야 하므로 보조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이 필요함
- 보조금 집행잔액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예산총계주의 원칙<sup>4)</sup>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이번 사업의 경우 추가 감리 진행으로 인한 예산변경(2건, 22백만 원)과 공사가 차년도('24.1.29. 착공 '25.3.23.준공)까지 진행되어 예산 이월(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2건, 총 11억 55백만 원)이 발생하는 등 본예산 편성 시점에 정확한 집행잔액 예측이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전반적인 사업관리 및 공정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임

나. 세출예산안

- 2025년 제1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52억 21백만 원 대비 0.3%인 3억 44백만 원을 증액조정하는 내용으로, 1개 사업에서 3억 75백만 원을 증액하고, 1개 사업에서 31백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4)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증액 내역은 ‘청년 친화도시 조성(자치단체경상보조금)’사업에 3억 75백만 원이며,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공공운영비)’사업에 31백만 원을 조정하는 내용임

〈 2025년 제1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통계목	기정 예산	요구 금액	추경 예산(안)	요구사유
계(2건)			(X -) 105,221	(X 250) 344	(x 250) 105,565	
1	청년 친화도시 조성	소계	(X -) 0	(x 250) 375	(x 250) 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악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매칭을 위한 지방비 확보 필요 (※국비 250백만원 포함)</li> </ul>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 0	(x 250) 375	(x 250) 375	
2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소계	420	△31	3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부터 ‘시민참여예산’과 ‘청년자율예산’의 통합 운영됨에 따라 기존 ‘청년자율예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전액 감액</li> </ul>
		공공 운영비	420	△31	389	

다. 세출예산 사업별 검토

(1) 증액 사업 - 청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별설명서 P.183~188, 예산서 P.129)

- ‘청년 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 특성·여건에 맞는 청년정책 추진으로 지역청년의 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모델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에 근거<sup>5)</sup>하여 국무총리가 기초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관악구’가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sup>6)</sup>되어 국비 2억 50백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국비·지방비 매칭을 위해 3억 75백만 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고자 함

5)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청년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청년친화도시 지정결과 안내(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72 (2025. 2. 11.)

**< ‘청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250,000) 375,000	-	(x250,000) 375,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250,000) 375,000	-	(x250,000) 375,000

**< ‘청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역 >**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추경예산(안)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청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비 = 375,000천원
	증감사유	
	국비매칭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확보 필요 (국비-지방비 매칭비율 5:5, 국비 250백만원)	

- ‘청년 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사업비는 국무조정실이 부담하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가 부담하는 지방비의 5:5 비율로 조성되며,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간 지방비 부담비율은 5:5 원칙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서울시가 편성하는 지방비는 1억 25백만 원 임. 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운영지침<sup>7)</sup>에 따르면 지방비 미확보시 보조금 전액 반납 및 청년친화도시 지정이 취소되기 때문에 지방비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국무조정실 ‘청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 개요 >**

<p><b>1. 배경 및 목적</b></p> <p><input type="checkbox"/> 배 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정책이 국가정책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으나, 지자체별 편차가 있어 지역 청년정책 불균형 발전</li> <li>○ 지역의 특성·여건에 맞는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모델 사례 발굴 필요</li> </ul> <p><input type="checkbox"/> 목 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고, 他지역으로 확산 *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8</li> </ul>
---

7) 2025년 청년친화도시 사업 운영지침,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2025. 4.)

## 2. 지정 개요

### □ 지정대상

- 시·군·자치구(226개), 특별자치시(세종)·도(제주)
  - ('25년 지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상남도 거창군

### □ 지정기간 및 내용

- 지정일로부터 5년간, 행·재정적 지원
  - (재정지원) 지정 1~2년, 年2.5억원(국비,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 (행정지원) 컨설팅, 교육, 정책자문 등

## 3. 추진체계

### □ 운영체계

- (중앙-지자체) 국조실-지정지자체(광역포함) 정기협의회 운영(분기)
  - (국조실) 운영지침 마련 및 국비 예산 지원·관리 등 제도 총괄
  - (지정지자체) 계획수립 및 지방비 예산 확보하여 사업추진 \* 국비-지방비간 5:5 매칭비율 원칙
- (광역-기초) 지방비 예산 공동으로 편성(5:5)\*하여 사업추진
  - \* 광역-기초간 5:5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별 여건에 따로 상호협약하여 조정
  - 특히, 지역내 유·무형 자원 및 각종 정부사업 연계 위해 광역지자체 역할 중요
    - 청년정책 전국 확산 통해 균형발전에 기여
  - ⇒ 객관적 성과평가 통해 국비지원 관리하고, 지방비 확보 등 사업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취소

출처 : 2025년 청년친화도시 운영지침, 국무조정실

## (2) 감액 사업 -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사업별설명서 P.189~192, 예산서 P.129)

-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사업은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을 통해 청년당사자가 직접 정책기획 및 청년자율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개별로 운영 중이던 '청년자율예산제도' 및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합 운영하게 되면서 청년자율예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편성되었던 공공운영비 31백만 원을 전액 감액하려는 것임

〈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389,000	420,253	△31,253
사무관리비	379,000	379,000	-
공공운영비	0	31,253	△31,25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10,000	-

〈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사업 추가경정예산 세부 내역 〉

과목구분	2025년 본예산	2025년 추경예산(안)
공공운영비	○청년자율예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31,253천원	= △ 31,253천원
	증감사유	
	시민참여예산과 청년자율예산 통합 운영에 따른 관리시스템 통합으로 유지관리비 전액 감액	

- ‘청년자율예산제도’ 및 ‘시민참여예산제도’ 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예산편성과정 등에 주민참여)<sup>8)</sup>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와 청년 당사자의 시각이 반영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자율예산제도’를 추가로 도입함

〈 서울시 참여예산제도 운영현황 〉

구 분	시민참여예산	청년자율예산
관련조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관리부서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위원회	시민참여예산위원회(205명)	청정넷(청년정책네트워크, 500명)
도입시기	2012년(예산편성 2013년)	2019년(예산편성 2020년)
운영규모(목표)	500억원(자유제안+약자동행)	100억원(시민 삶의질 개선 등)

2024년 12월 기준

8)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야 한다.

- ‘청년자율예산제도’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중 하나로 정착되었으나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새로운 정책 개발이 어려워지고,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되는 정책과도 내용이 중복되어 부서 간 협의가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이에 따라 '20년 31건, 281억 원이었던 예산편성 규모가 '25년에는 6건, 16억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청년자율예산 편성 추이(2020~2025)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억원)	281	242	84	71	25	16
사업(개)	31	16	10	12	7	6

- 이러한 예산편성 추세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유사 제도 중복 운영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고 시너지 확보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4년 12월에 두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sup>9)</sup>하였으며, '25년부터('26년 예산편성부터) 추진하고 있음
- ‘시민참여예산·청년자율예산 통합운영 계획’에 따르면,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 ‘청년 분과’를 신설하고 그 구성원을 청년참여기구(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청년 관련된 제안 사업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확인됨
- ‘시민참여예산제도’와 ‘청년자율예산제도’가 별개로 운영되었으나 동일한 ‘참여예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그간 기획조정실과 미래청년기획관이 협의를 통해 동일한 시스템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각각 편성하여 집행해왔음

9) 시민참여예산·청년자율예산 통합운영 계획,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15524 (2024. 12. 26.)

### < 최근 3년간 참여예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기획조정실	미래청년기획관
2025년	1302,53	99,000	31,253
2024년	143,850	113,850	30,000
2023년	199,370	175,000	24,370

- 이번 감액추경은 참여예산제도의 통합 운영으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기획조정실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 미래청년기획관에서 편성 하였던 공공운영비 31백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 종합의견

- 2025년 제1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9억 18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6억 3백만 원 대비 52.1%, 3억 14백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 일반회계에서 국무조정실 ‘청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2억 50백만 원과 ‘2024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 정산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60백만 원 등 총 3억 10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서울청년센터 성북 조성’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임
- 2025년 제1회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52억 21백만 원 대비 0.3%, 3억 44백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청년 친화도시 조성(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3억 75백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공공운영비)’에 31백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내용임

- ‘청년 친화도시 조정’ 사업에서의 증액은 2025년도 관악구의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위해 3억 75백만 원(국비 2억 50백만 원 포함)을 신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국비와 지방비(광역-기초 5:5) 5:5 매칭 원칙에 따라 서울시가 1억 25백만 원을 부담하는 것임. 국무조정실 운영지침상 지방비 미확보 시 보조금 전액 반납 및 청년친화도시 지정 취소가 되므로 지방비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적 근거도 명확하여 예산 편성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사업에서의 감액은 기존에 개별 운영되던 ‘청년자율예산제도’와 ‘시민참여예산제도’를 2025년부터 통합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청년자율예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1백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것임. 두 제도 모두 참여도와 성과가 부진하고 운영과정에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여 유사제도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위해 통합 운영을 결정하였음. 제도 개편에 따라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를 기획조정실에서 전담하게 되었으며, 이는 재정적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됨